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 · 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2.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물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
5.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물류 관련 시설

②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 ·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확충
  2. 물류정보화 · 표준화 또는 공동화
  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5. 그 밖에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자금 지원
  2.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⑤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른 자금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자금

[전문개정 2015. 12. 22.]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자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조신설 2012. 11. 30.]

**제31조(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 시 · 도지사는 법 제46조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 · 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

[본조신설 2015. 12. 22.]

**제32조** 삭제 <2014. 2. 5.>

**제33조** 삭제 <2014. 2. 5.>